

전주문화재단 총서 I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전주 기사

국립전주박물관



0013935

 전주문화재단

편집위원회

감 수 이희권(전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위 원 하우봉(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최병운(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장)
홍성덕(전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이선아(한국고전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편 집 이태호(전주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창주(전주문화재단 연구원)
정 리 김주섭(전주문화재단 관리지원팀장)
정미선(전주문화재단 연구원)
손제희(전주문화재단 연구원)

전주문화재단 총서 I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전주 기사

인 쇄 2006년 12월 일
발 행 2006년 12월 일

발행인 장 명 수

발행일 2006.

발행처 전주문화재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0-3

Tel 063-283-9225~7 Fax 063-283-9228

<http://www.jjcf.or.kr>

인쇄인 서정환

인쇄처 신아출판사

전 화 (063) 275-4000

F A X (063) 274-3131

비매품

태종 11년 4월 2일 (임진)

대역죄에 관계된 전 완산 부윤 한담 등 29명을 종편하다

태종 12년 8월 18일 (경오)

도성 안에 배꽃이 피다

도성(都城) 안에서는 배꽃이 피고, 완산부(完山府)에는 배·살구·괴(槐)³⁾·오얏·앵두·능금 등의 꽃이 활짝 피었다.

태종 12년 8월 20일 (임신)

완산의 자제패(子弟牌)를 혁파하다

완산(完山)의 자제패(子弟牌)⁴⁾를 혁파하였다. 이보다 앞서의 완산은 선원(璿源)⁵⁾이 시작한 곳이라 하여 특별히 자제패(子弟牌)를 두었더니, 이때에 이르러 이를 혁파하고, 재주 있는 자를 선택하여 시위군(侍衛軍)에 분속(分屬)하였다.

태종 12년 8월 28일 (경진)

전라도 미곡의 육로 운반을 명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전라도 미곡(米穀)의 육전(陸轉)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상서(上書)하였다.

“충청도 각관(各官)의 전조(田租)는 전객(佃客)⁶⁾으로 하여금 수송하되, 내포(內浦)·금천(金遷)에 이르게 하고, 전라도 완산 영내(完山領內) 동북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청주 영내(淸州領內)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완산 서남 영내에 있는 각관은

3) 괴(槐) : 화나무

4) 자제패(子弟牌) : 지방 토호(土豪)의 자제(子弟)를 모아서 따로 설치한 패(牌). 부방(赴防)을 하는데 여러 가지 특전(特典)이 베풀어졌음

5) 선원(璿源) : 왕가의 선조

6) 전객(佃客) : 전호(佃戶)소작인

수송하여 공주(公州)·홍주(洪州)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남원(南原)·순천(順天)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동북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나주(羅州)·광주(光州)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서남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되, 경상도 역시 이 예(例)에 의하여 차례대로 전수(轉輸)하면, 노정이 모두 3일 동안의 거리에 불과하고, 왕복하는 데 머무는 것이 모두 10일에 불과하게 되어, 전객이 직접 수납하는 폐단을 일거에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 12년 11월 15일 (병신)

완산·계림·평양의 어용전(御容殿)을 태조 진전(太祖眞殿)이라 고치다

완산(完山)⁷⁾·계림(鷄林)⁸⁾·평양(平壤)의 어용전(御容殿)⁹⁾을 ‘태조 진전(太祖眞殿)’이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

태종 12년 11월 21일 (임인)

완산 임천사(臨川寺)의 돌부처가 땀을 흘리다

태종 12년 12월 10일 (신유)

전라도 완산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태종 13년 4월 7일 (을묘)

유양·이천우·이숙번·황희·유정현·이지승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이행(李行)을 완산부윤으로 삼았다

7) 완산(完山) : 전주

8) 계림(鷄林) : 경주

9) 어용전(御容殿) : 조선조 초기에 전주·경주·평양에 태조(太祖)의 위용(粹容·御眞)을 모시었던 전각(殿閣). 태종 12년(1412)에 태조 진전(太祖眞殿)으로 고쳤음

세종 즉위년 11월 4일 (경술)

노귀산·하자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겸(金謙)을 전주부윤으로 삼았다.

세종 1년 10월 13일 (갑신)

민약손을 전주부윤, 이상을 판황주목사로 임명하다

세종 2년 10월 17일 (임자)

맹사성·이지강·정역·신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경(鄭耕)을 전주부윤으로 명하다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예조에서 각도 진상 물품의 허실에 대해 아뢰다. 백산(白鰲)엿은 오직 전주에서만 만드는 것인데, 등록되지 않았다

세종 3년 7월 19일 (기묘)

전주부윤 정경의 졸기

전주부윤(全州府尹) 정경(鄭耕)이 관(官)에서 졸(卒)하였다. 정경은 본관이 나주(羅州)이니, 고려의 명장(名將) 정지(鄭地)의 아들이었다. 웅위(雄偉)하고 지략(智略)이 있음은 그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품이 돈후(敦厚)하고 명쾌(明快)하였다. 일찍이 의주부사(義州府使)·안동부사(安東府使)로 있어, 명성과 공적이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광주(光州)에 있으므로, 전라도 관찰사가 되고, 또 두 번째로 도절제사가 되니, 군인과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였다. 이 때에 와서 병으로 돌아가니, 나이 52세이었다. 아들이 둘이니, 정종(鄭種)과 정기(鄭機)였다.

세종 3년 8월 17일 (정미)

박영홍섭·현귀면·곽승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담(權湛)을 전주부윤으로 삼았다

누어 보내고, 정창(京倉)에 운반해 온 곡식도 한편으로는 매일 방출하고 한편으로는 충주(忠州)로 운송하고 있으니, 1개월 뒤에는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제 유 제독이 며칠 안에 전라도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니, 그 도에 주둔하고 있는 수륙 관병(水陸官兵)이 총 3만여 명으로 한 달에 소요되는 곡식이 8천여 석에 이르고, 영남 두 길에 주차한 관병은 이보다 갑절이나 많으니 소요되는 군량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달에 거사할 지는 잘 모르겠으나, 3~4개월간 지출한 군량은 오로지 중국에서 온 것에만 의존하였으니 앞으로 재차 운송해 올 때 만일 전날처럼 늦어지게 되면 대사는 그르쳐지고 맙니다. 배가 돌아오는 즉시 수십 척에 선적하고 차사원(差使員) 한 명을 정하여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15만 석 정도를 반드시 재차 운송하도록 해서 검찰사(海西檢察使) 유근(柳根)에게 하유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31년 7월 11일 (갑오)

황신이 왕 안찰과 유 제독의 아문 때문에 전주부의 물력이 쇠잔해졌음을 아뢰다

전라도 관찰사 황신(黃愼)이 아뢰었다.

“전주부(全州府)에서 왕 안찰(王按察)과 유 제독(劉提督)이 두 아문을 일시에 함께 건축하는데 종횡으로 그 구조가 웅장하여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읍의 백성들은 농사를 전폐한 채 굶주림을 참으며 부역하고 있는데 매질까지 당하고 있어 백성들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선조 31년 10월 13일 (을축)

민몽룡 · 이정신 · 이정구 · 허균 · 심희수 · 황정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신(李廷臣)을 전주부윤으로 삼았다

선조 31년 11월 28일 (기유)

호조가 전라도 수륙 관군의 식량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전라도 수륙(水陸) 관군(官軍)의 식량에 대해 분호조 참의(分戶曹參議) 이민각(李民覺)과 조도사(調度使) 김상준(金尙儻)이 분담 조치하고, 또 총관사(摠管使) 한효순(韓孝純)이 다니며 살피고 있습니다. 본도(本道) 각 고을에 쌀과 콩을 합쳐 수송한 것을 제외하고 중국 군량을 수송한 숫자가 전주(全州)는 쌀과 콩을 합쳐 이미 3만 7천 7백 60여 석에 이르렀고, 나주(羅州)와 해진(海陣)은 쌀과 콩을 합쳐 1만 7천 1백 여 석입니다. 공격할 시기를 결정한 이후로는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비축한 것은 모두 수합하였으며, 들판에 있는 신곡(新穀)은 방아를 찧어서 쌀을 만들어 마음을 다해 수송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군사가 며칠을 굶주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간의 곡절을 비록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왜교(倭橋)에서 왜적을 포위하던 날 본도(本道)의 백성들은 모두 왜적을 섬멸할 시기가 멀지 않다고 여겨 비록 80세 된 노파와 10세 된 아이들까지도 모두 기뻐 뛰며 앞을 다투어 군량을 이고 저다 주어서 군영 앞에 모인 곡식이 한 달 동안은 먹을 만하다고 하였는데, 뜻밖에 후퇴하여 미처 수습할 겨를이 없어 수백 리 사이에 곡식이 마구 흩어졌습니다. 그때 유실된 숫자가 매우 많았으나 그 뒤에도 떨어졌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생각건대 유제독(劉提督)이 군문(軍門)과 안찰(按察)의 독촉으로 인하여 부득이 도로 순천으로 들어갔는데 군량을 관리하는 신하가 비록 극력 수송하였지만 놀라 흩어진 백성들을 제때에 부역시키지 못하여 군량 수송이 늦어지자 제독이 그것을 트집 잡아 왕 안찰(王按察)에게 고하고 안찰은 이어 군문에게 고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개 군량을 관리하는 여러 신하들과 접반사·순찰사 등으로부터도 현재까지 군량이 떨어졌다는 장계가 없습니다. 먼 지방의 일은 여기서 헤아리기 어려운 형편이니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좌의정 이덕형 이하 모든 관원에게 유고(諭告)하여 치계(馳啓)케 한 다음에야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일의 사세는 비록 재거(再舉)하려 한다고 하지만 중로(中路)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서(東西) 2로(路)도 후퇴를 면치 못하여 사기는 이미 떨어지고 군위(軍威)는 점점 손상되며 시일을 지연시켜 성공할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추워져 밭길도 끊기게 되었으니 중국의 군량이 비록 의주(義州)에 산처럼 쌓여 있다 하더라도 진영으로 옮기기는 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부지런히 수합하여 당장만 무사하기

를 바라지만 몇 달 후에는 다시 손쓸 곳이 없게 될 것이니 대사(大事)가 클리질 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알 것입니다. 매우 근심되어 아뢰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32년 2월 14일 (갑자)

유격 진잠의 관소에 거동하다

상이 유격 진잠(陳蠶)의 관소에 거동하였다. 진잠이 말하기를,

“저는 중국 조정의 명을 받들어 필시 전주(全州)에 주둔할 것인데 저의 군사는 진주(眞州)·보주(保州)·정주(定州)의 군사와는 달라 좁쌀을 즐겨 먹지 않으니 국왕께 서는 쌀을 마련하여 지급해 주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쌀은 미처 운반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를 번갈아 방출하는 것이오.”

하자, 진잠이 말하기를,

“저는 이 곳에 오래 머물 것이므로 군량 부족 문제를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32년 2월 20일 (경오)

사간원이 시임 대간을 외방에 차임하지 말 것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대간(臺諫)을 설치하여 언론의 책임을 주고 혹시 결원이 생기면 즉시 차출하여 하루라도 비워두지 않는 것은 이목(耳目)의 책임이 극히 중한 것으로서 진언하는 길을 넓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니, 그 뜻이 실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군량을 감독하여 운반하는 일로 인하여 양사(兩司)의 관원이 계속 나가서 일을 보게 하니 이는 비록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급하게 여기는 뜻이

정조 14년 4월 7일 (정사)

어사 최현중의 의견에 대해 중신들이 반박하는 의견을 내다

비변사가 함양에 나갔던 어사 최현중의 서계에 대해 복계(覆啓)하기를,
“.....어사의 서계에 열거하여 논한 것으로 보면, 전주(全州)·금구(金溝)·여산(礪山)·함열(咸悅)·천안(天安)·직산(稷山)에서는 더러 4, 5냥을 초과하기도 한다는데, 그것은 간사한 관리들의 농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필에 대한 부역은 2냥이 되어야 하는데, 때마침 면포가 귀해져서 배로 징수하니 이것만도 가련한데 더구나 3배 가까이 징수하는 자도 있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수령이 비록 체차되어 갔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결코 6개 고을의 수령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잡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조 15년 5월 22일 (병신)

각도에서 납제에 쓰는 고기를 진상하는 규정을 고치다

각도에서 납제(臘祭)에 쓰는 고기를 진상하는 규정을 고쳤다. 선혜청이 아뢰기를,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는 아뢰기를 ‘납제에 쓰는 고기를 꿩으로 대신해 각읍에서는 영저리(營邸吏)에게 맡겨 바치게 하는데, 덧붙인 값을 주는 고을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합니다. 이른바 덧붙인 값은 백성들의 토지에 의하여 받아내거나 관청 창고에서 대기도 하여 그 규정이 일정하지 않으나, 생돼지를 바칠 때와 비교해보면 특별한 폐단은 없습니다. 이제 만약 본가(本價)를 바치게 한다면, 비단 여러 고을에서 모두 불편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전주(全州)의 백성 형편으로 말하더라도 살아갈 방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단지 이 영저리의 일뿐이므로 값에 맞춰 서로 전해주는 것이 서울 공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익의 많고 적음을 논할 것 없이 이 담당했던 물건마저 놓쳐버리면,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장차 어려울 것이니 본가(本價)를 바치는 것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덧붙인 값을 없애고 본 회감 값만 지급하여 감영에서 준 돈과 함께 영저리에게 주도록 하소서.’ 하였고,.....전라도에서는 덧붙인 값을 없애고 본 회감 값만 주어 감영의 돈과

함께 영저리에게 내주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남의 영저리(營邸吏)가 삭선(朔膳)으로 바치는 물선(物膳)도 역시 원공(元貢)의 하나로서 그 권리를 비싼 값에 매매하여 대대로 전하니, 경공인(京貢人)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해마다 봄에 참배하는 행차 때 저자거리에 연(輦)을 멈추고 경공인들에게 고통을 물어보는 것을 규례로 삼았는데, 대체로 조정에서는 서울이나 지방을 똑같이 보고 있다. 기왕여기에 생각이 미쳤으니 한 차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연전에 무뢰배들이 함부로 호남 영저리의 공물에 대한 권리를 엿보아 감히 서울의 공물로 만들 계책을 부렸던 일은 항상 놀랍고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상언(上言)한 자나 정소(呈訴)한 자를 막론하고 그 주모자를 묘당으로 하여금 법사(法司)에 넘겨 엄히 처벌하여 섬에 유배하고 사면령이 내릴 때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 호남의 도백에게 향공인(鄉貢人)들에게 이 점을 효유해줘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게 하였다. 선혜청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 변통을 한 뒤에는 서울의 관청에서 바칠 것이니, 꼭 선달로 기한을 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말린 송어나 인삼 값의 규례대로 매년 정월에 한꺼번에 바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돈·베·쌀의 수량을 나누어 마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대신들에게 의논했더니 말하기를, ‘말린 송어와 인삼 값은 다섯 등분해서 둘은 쌀로, 둘은 베로, 하나는 돈으로 바치는 방식을 정했지만, 납제에 쓰는 고기에 대해서는 여섯 도가 회감하는 쌀과 돈의 값이 제각기 다르므로 다섯으로 나누어 서로 참작하는 과정에서 자연 모순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돈과 쌀을 대략 반반씩 내는 규례를 모방하여 편리한 대로 요량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정조 16년 6월 2일 (기사)

영남과 호남에 홍수가 나 구휼하게 하다

이때에 영남과 호남에 홍수가 나 영남은 대구(大丘) 등 28개 고을에서 8백 25호가

피내려가거나 묻히고 28명이 빠져 죽거나 칼로 죽었으며, 호남은 전주(全州) 등 5개 고을에서 1백 58호가 피내려가거나 칼로 죽었고 8명이 빠져 죽었다고 양도의 관찰사가 상문하니, 전교하기를,

“영남·호남의 수재가 이렇게 엄청나니 매우 가엾다. 무너지거나 피내려간 집을 속히 집을 지어서 머물러 있을 곳을 정해 주고, 가난하고 고독한 집에 대해서는 신구(新舊) 환자(還子)를 징수하지 말며, 가난하고 고독한 자는 아울러 신역(身役)도 징수하지 말며, 죽은 자의 생전 환자와 신역을 아울러 논하지 말라. 양도 영읍(營邑)에서 거행하는 근무 성적을 앞으로 혹 어사(御史)나 혹 선전관(宣傳官)·비랑(備郎)을 보내 추천하여 직간할 것이니, 이로써 엄칙하라.” 하였다.

정조 16년 7월 20일 (정사)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의 청으로 호남에 포제를 행하다

호남에 포제(酺祭)를 행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해변 지방의 병충해의 재변이 열흘부터 보름사이에 배나 치열하여 전주(全州) 등 47개 읍진(邑鎭)에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포제를 설행하여 재이를 물리칠 수 있도록 향축을 해조로 하여금 내려 보내주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정조 17년 9월 2일 (임진)

장용영에서 급료로 줄 쌀이 부족하자 이를 해결해 주다

장용영 제조(壯勇營提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본영에서 급료로 주는 쌀이 아직도 넉넉하지 못하여 달리 융통하여 숫자를 채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혜청이 삼남에서 진상하는 약재(藥材)를 임시로 감해준 대가로 받은 쌀 1천 섬은 아직 귀속된 곳이 없고, 호남에 있는 호조가 사들인 쌀과 별검미(別檢米)⁴⁾중에서 모조(耗條)를 합한 1천 섬 및 한성부에서 가져다가 쓰고 낸 모조

1천 섬은 진휼청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만 진휼청은 다른 곳에서도 옮겨다 쓸 수 있는 형편이니, 이상의 것을 합한 쌀 3천 섬을 본영으로 떼어 넘겨주어야 하겠습
니다. 그리고 한성부 항목의 본가(本價) 3천 냥은 본영에서 해마다 보내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본영에서 관할하는 둔토(屯土) 가운데 가산군(嘉山郡)의 논 17결(結) 68부(負) 9
속(束)과 정주목(定州牧)의 논 2결 7부 2속은 미처 면세받지 못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면세하여 주소서.”

하니, 따랐다.

정조 19년 5월 22일 (임신)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이 올린 서계와 별단

호남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이 복명하고 서계를 올렸다…… 만석이 또 별단(別
單)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1. 전주에 있는 양향청(糧餉廳) 둔전세(屯田稅)를 편중되게 납부시키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경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세금을 줄이게 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1. 전주 상관(上官) 고을의 화전(火田) 68결(結)은 곡물 대신 돈으로 호조와 내사
(內司)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토지에서 두 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니 해조로 하여금 내사의 토세(土稅)는 면제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묘당에 유시하기를,

“내일 경들이 여러 재신(宰臣)들과 함께 비국에 모여서 암행 어사의 별단을 조목
별로 사리에 맞게 초기(草記)해서 어사를 차임해 보낸 실효가 백성에게 미칠 수 있도
록 하라.”

하였다.

4) 별검미(別檢米) : 영조(英祖) 때 전주 감영(全州監營)에서 특별히 비축했던 쌀. 전주 감영의 별비전
(別備錢)을 가지고 곡식을 사서 비축하였는데, 그때 전라감사가 일찍이 검찰사(檢察使)를 지냈기
때문에 별(別)자와 검(檢)자를 따서 합하여 붙인 이름이다